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조 현 예

「예산의 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예산의 이월, 이·전용·변경사용, 이체-

1. 예산의 이월

가. 예산의 이월 일반

1

예산의 이월제도 개념



질 의

- 예산의 이월제도란 무엇이며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예산의 이월제도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계속비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2 이월예산의 운영 방법



질 의

- 이월예산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아 「예산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은 동일 목적을 가진 이월하는 연도의 세부사업과 함께 관리
 - 다만, 이월결정시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조화된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신규로 세부사업 설정 관리
- 이월예산 확정시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

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 구 분 | 명 시 이 월 | 사 고 이 월 | 계 속 비 이 월 |
|------|--------------------|--------------------|--------------------|
| 이월단위 | 편성목 단위 | 편성목 단위 | 편성목 단위 |
| 요구권자 | 자치단체의 장 | 부서(기관)의 장 | 자치단체의 장 |
| 승인권자 | 지방의회 | 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 |
| 요구시기 |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이내 |
| 확정시기 |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이내 |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
| 기간연장 | 사고이월 가능 | 불가능 | 의회의결 연장, 사고 |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보조금의 간주처리 가능 여부



질 의

-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회계이월 관련 2007년 12월 말에 송금된 사업비를 2008년도 세입예산에 편성 사용이 가능한 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8. 1.23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세입조치 및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다음연도 1회추경 시에 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국비에 관하여는 간주 처리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기준(2005. 4.21. 재정정책팀 - 454)

- 최종 추경 예산 편성시 예산총칙에 '간주한다' 라는 규정을 명시하여 처리하고, 간주처리 후에는 지방의회에 간주처리내용을 보고
- 다만 지방비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 추진

나. 명시이월

1 명시이월된 민간자본이전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질 의

○ 새마을단체의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위해 2006년도 민간자본이전예산을 편성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새마을건립기금설치 조례를 제정, 새마을단체로 교부한 후 반납 절차를 거쳐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7.10.25

○ 의회 의결로 확정된 것으로 명시이월된 자본보조사업비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불가



2

명시이월비 의회승인액과 최종확정액과의 관계



질 의

○ 명시이월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월액을 승인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지출액의 변동이 생겨 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27조에 의거 이월예산 확정시 의회승인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확정할 수 있는 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1. 2. 3

○ 명시이월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50제1항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비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금액을 초과하여 확정할 수 없을 것임

3

명시이월비의 당해연도 적용기준



질 의

○ 지방재정법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의 규정에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연도의 적용기준은



회 신

재경 13310-309, 1997. 4.23

- 명시이월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 당해연도라는 것은 최초로 예산이 편성된 연도를 말하는 것임

4

명시이월사업비의 의회의결 시점



질 의

- 1999년도 사업 중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할 경우에, 의회 의결시점을 '99년도 정리추경예산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1999.11.29

- 명시이월을 결정하는 시점은 당해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연도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따라서 '99년도의 사업 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99년도내의 정리추경시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추경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의결을 득하여야 할것임

다. 사고이월



1

민간보조사업의 사고이월로 인한 대상자 변동가능 여부



질 의

○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사고이월후 대상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당초 시행지침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변동이 가능한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8. 2.26

○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는 그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등의 장래에 발생될 채권에 대한 지급의 의무를 확정된 행위이므로 사고이월후 사업대상자 변경은 불가함

2

협상에 의한 계약의 사고이월 가능여부



질 의

○ 2009년 추경을 통해 수립한 예산(경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으로 1월 중 사업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2호에 의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10.1.5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2호의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



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규정 한 것으로서, PQ심사 대상이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공사입찰 등 입찰을 위한 공고 이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계약은 입찰공고를 하여 대상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사고이월을 인정한 것임

○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위 법 조항에 따르면 2009년도에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따른 사고이월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3 사고이월사업의 원인행위변경 가능여부



질 의

-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재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 이로 인한 재 원인행위 사항은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월 예산의 부족으로 추가 원인행위는 불가하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감액하여 정산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1999.12.6

○ 사고이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함





라. 계속비이월

1 계속비사업으로 의회 승인된 예산 사업명변경 여부



질 의

- 계속비사업으로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현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
계속비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다른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8. 4.23

-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므로 사업비의 변경, 부기 변경 등은 불가하며 잔액이 있는 경우 불용처리, 신규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2 계속비사업의 의결시점



질 의

- 지방의회의 의결시점에 대하여 2009~2012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할때 2008년도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2009년도 예산 편성과 함께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8. 3.13

○ 계속비는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것이므로 당연히 연도별 금액이 당해연도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 따라서 위 사업의 경우는 2009년도 예산편성과 함께 의결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예산의 감액 의결 가능 여부



질 의

○ 자치단체가 시설공사를 턴키입차로 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으로 총액 180억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은 경우,

○ 공사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5%로 낙찰되어 낙찰차액이 발생하였다면, 2010년도 예산편성시 의회가 예산액을 낙찰차액만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재정정책과-1057(2010.3.2)

○ 지방재정법 제42조는 자치단체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 동법 제50조 제4항은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 의결된 계속비사업의 각 연도별 금액은 지방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므로 계속비의 당해연도 예산편성액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임의로 삭감 조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다만, 계속비사업의 현저한 변경 등 예산을 조정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이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예산의 이·전용 및 변경사용

가. 예산의 이·전용

1 예산의 이용 방법



질 의

- 예산의 이용 방법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또는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음으로써 이용할 수도 있음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상호 이용할 예산내역을 통계목까지 작성 요구하고 예산 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이용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이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이용처리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지방의회 승인사항)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이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2

다른 부서의 예산 사용(이용)



질 의

- 다른 부서의 예산을 업무협의를 통해 집행해도 되는지
예) A국 A-1과에서 용역비 예산이 부족하여 B국 B-1과에 있는 용역비를 사용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함이 원칙임.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정책사업간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용 절차(의회 승인)를 통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함

3

예산의 전용 개념



질 의

- 예산의 전용이란 무엇인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대상인 동일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도 예산의 전용으로 봄

4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예산의 변경사용이 전용인지 여부



질 의

-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예산(편성목, 통계목은 같음)변경이 예산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8. 6.16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됨
- 단,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의 편성목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4

사고이월된 사업의 계약 해지에 따른 원인행위 변경 가능 여부



질 의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도에 공사는 A사, 관급자재 구매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하던 중, B사의 납품 미이행으로 2009. 2.19 계약을 해지하여 사업예산은 사고이월이 된 경우,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고이월 하여 계약을 이행하던 중 계약해지 된 관급자재 구매에 대하여 계약해지후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후 기존에 사고이월된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회계공기업과-3001(2009.6.2)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당해 원인행위로 인하여 집행하는 경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 계약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된 예산의 경우에도 당해 계약의 집행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나,

○ 자치단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고 이월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원인행위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을 유지하는 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함

5

구조화되지 않은 세부사업으로의 전용가능 여부



질 의

- 예산의 전용을 할 때 당초 구조화 되지 않은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전용이 가능한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전용이라 함은 세출예산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문제점인 “추계에 의한 예산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사항 때문에 발생하며 운영 과정상의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운영은 최소화 되어야 함
- 사업예산 제도하에서 세부사업이 예산편성 목적을 가진 최소의 단위이므로 당초에 존재하지 않은 목적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전용의 유연성을 초과하는 것임
- 다만, 예산의 편성목은 세부사업의 경비 성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없는 편성목을 신설하여 전용조치를 하여도 당초 목적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함

6

이월예산 전용 또는 변경사용 가능 여부



질 의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는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용이 가능한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함
- 이월된 예산은 회계연도가 경과한 경비로 이월 목적 외 전용은 불가하며,
 - 다만 이월 목적에 따른 사업 집행 중 필요 시 편성목내 통계목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7

국비 재배정사업의 전용



질 의

- 국비재배정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7. 8.30

- 국비 재배정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전용 또는 변경사용할 수 없음



나. 예산의 변경사용

1 예산의 변경사용 개념



질 의

- 예산의 변경사용이란 무엇인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예산의 변경사용이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또는 실·과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임
 - ※ 변경사용의 범주라 하더라도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2 변경사용시 사전계획 처리



질 의

- 예산의 변경사용은 사업부서의 장이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업부서에서 변경 사용한 예산은 중기재정계획 변경과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은 예산 총액 범위의 예산 정책방향이고, 예산편성은 세부적인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중기재정계획의 단위·세부사업까지 꼭 맞도록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음

3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예산 변경사용의 제한을 보면 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 요건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예산 변경사용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 제한 비목에 해당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편성목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나
○ 편성목내 통계목은 법정과목이 아니므로 전용제한 비목이라 할지라도 세부사업이 같고 동일 편성목내 통계목간이라면 변경사용은 가능함

4

단위사업내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예산의 변경사용시 세부사업 신설 및 부기명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변경사용하는 단위사업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 사용이 가능하나,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사업 신설 및 부기명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을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다만, 이 원칙에 모든 세출예산이 집행 될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재해대책 등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이에 대비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 「예산의 전용」 과 「변경사용」 제도임
 - 따라서, 예산 전용과 변경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이월사업의 편성목 변경가능 여부



질 의

- 2007년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 명시이월 하였음. 2008년 집행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8. 3.14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편성목간의 변경은 불가



6 시설비를 다른 세부사업의 시설비로 변경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세출예산 중 정책·단위사업은 동일하나 세부사업을 달리하는 예산 중 A세부사업 시설비 잔액이 발생하여 B세부사업의 시설비 부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변경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되므로 세부사업간 변경이 불가

의견2)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편성목으로의 전용은 불가하지만 세부사업간 변경사용은 가능 하다는 의견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10. 3.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각 호의 비용을 다른 ” 비목 “에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동 조항의 “비목”은 정책-단위-세부사업 및 편성목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의하신 내용 중, ‘A 세부사업의 시설비’와 ‘B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편성목은 동일하더라도 각 세부사업이 다르므로 다른 비목에 해당됨

○ 따라서, ‘A 세부사업의 시설비’와 ‘B 세부사업의 시설비’ 간에는 전용 및 변경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3. 예산의 이체

1 예산의 이체 개념



질 의

- 예산의 이체란 무엇인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변경(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2 예산의 이체시 의회 승인 여부



질 의

- 예산 이체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한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를 의회에 승인받은 사항이므로 별도 의회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



3

예산의 이체 단위



질 의

- 예산 이체의 단위는 무엇인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예산 이체는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필요 시 통계목 단위의 금액 이체 가능

※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로 보았을때 예산 이체는 정책사업 단위로 이체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 세부사업 단위로 이체.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 하에서는 조직의 변경에 따른 성과계획, 목표의 변경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체되어야 함

- 정책사업은 정책·단위·세부사업 단위로 이체하며, 이체 시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함

-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통계목 단위로 금액이체 가능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 및 통계목 금액을 배분하여 이체가능
- 행정운영경비라 하더라도 하위의 단위·세부사업이 사업단위로 이체될 수 있으며, 사업단위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통계목 단위 및 통계목 금액을 배분하여 이체가능



- 재무활동의 경우는 사업단위로 이체 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통계목 단위 금액이체도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사업구조화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

4

조직 변경 형태에 따른 예산의 이체 방법



질 의

-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의 방법과 관리방법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조직의 변경 형태에 따라 예산의 이체 형태가 다를 수 있음
 - 1)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 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봄
 - 또한 단순히 실과의 소속 실국이 변동되는 경우도 이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2)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 사업을 사용(내용의 변경 가능)
 -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사례1〉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부서가 아닌 기존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당초 A부서의 단위·세부사업은 B부서의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분야·부문은 동일)
- 다만, 기존 정책·단위사업에 포함하기가 사업의 성격상 어려우면 B부서에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함



〈사례2〉 A부서에서 수행하는 정책사업의 일부 단위·세부사업이 직무권한의 변동으로 신설된 B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

- 신설된 B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의 신설은 가능

3)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단위 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5

이체된 예산의 관리방법



질 의

○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예산의 관리방법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 된 사업의 이체 후 관리방법

- A부서에서 추진하던 사업(최소 세부사업 단위)이 B부서로 이체 되는 경우에는, 이체되는 사업의 일부가 A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 이체가 확정된 시점에는 이체받은 B부서에서 관리함

※ 이체 받은 부서에서 기존 부서에서는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 가능

○ 이체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관리방법

- A부서가 2개 이상 부서(A,B)로 나누어지는 경우 A부서에서 기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A부서에서 관리함

- 다만, A부서가 폐지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직무권한이 B부서로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이체 받은 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까지 관리



6

예산의 이체 절차



질 의

- 예산 이체의 절차는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 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이체요구 :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는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세출예산이체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이체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심의·조정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7

예산의 이체 범위 및 추경정리



질 의

- 예산 이체 범위는 무엇인지
- 추경전 이체의 내용을 추경예산서에 반영해야 되는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이체범위



- 사업단위 이체인 경우 이체 받은 사업의 모든 정보 즉, 당해예산액, 이월액 및 이·전용·변경사용된 예산현액 뿐만아니라 자금·지출(계약 포함)도 함께 이체됨
- 따라서, 이체된 예산의 추경 증감 또는 전용, 변경사용도 가능함
- 이체 내용의 추경예산 반영 여부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직무 권한의 변동만 있는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 없이 운용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서에 이체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8 이체 받는 부서에 사업신설 가능여부



질 의

- 조직 개편으로 사업을 이체 받아야 하는 부서의 정책사업이 이체하는 사업의 분야·부문과 틀린 경우, 주는 부서의 분야·부문에 맞추어 정책·단위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이체가 가능한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이체는 사업의 목적,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의 내용과 분야·부문의 정보가 변경될 수는 없음
- 따라서, 이체를 받는 부서에 동일한 분야·부문의 정책·단위사업이 없는 경우는 정책·단위사업을 신규로 신설하여 이체하여야 함
- 단, 이체의 최소 단위인 세부사업은 분할·합병이 불가능 하므로 기존 부서의 세부사업을 그대로 이체 받아야 함



9

이월사업에 대한 이체가능 여부



질 의

- 이월예산도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이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이체는 직무 권한의 변동에 의해 사업(최소한 세부사업)에 관한 관리 권한이 이동하는 것으로
- 이체 결정시 해당 세부사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즉, 당해예산액, 이월 및 이·전용·변경사용된 예산현액 뿐만아니라 자금·지출(계약 포함)도 함께 이체됨

10

부서신설에 따른 예산이체시 통계목 신설 가능여부



질 의

-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에 예산을 이체하면서 통계목을 신설하여 이체할 수 있는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의 경우 사업단위로 이체 하거나 행정운영경비 등의 통계목 금액을 배분하여 이체할 수 있으나, 기존예산의 과목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님



11

이체, 전용예산의 집행잔액 처리



질 의

○ 회계연도 중 이체, 전용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시 결산추경 등을 통하여 삭감 조정이 가능한지



회 신

인터넷질의답변, 2007. 7.10

○ 이체의 경우는 예산액으로 관리되므로 추경 등을 통하여 삭감 조정이 가능하나 전용예산의 경우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므로 불용처리 하여야 함

12

세입예산의 이체



질 의

○ 세입예산도 이체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사업예산운영기준FAQ

○ 세입예산은 장·관·항·목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이체 개념은 아니며 부기별 조직정보를 변경하는 차원임

○ 따라서, 이체 결정 시 세입예산의 이체 결정은 불필요하나 세입예산의 관리와 추경예산 편성 시 기정예산액 등 정보관리를 위해 부기별로 조직정보를 수정·변경하여 처리 함

